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에서 발령하는 직무대리 명령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어, 각 부대령에 부대장의 직무대리 대상자를 명시하여 직무대리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있는 부대의 경우 해당인원이 부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없는 부대의 경우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부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또한, 육군사단급 이상 부대령에는 지휘관이 장기간 공석시 상급부대에서 직무대리자를 파견했던 사례를 고려,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방시설본부령 등 32개 부대령 일부개정령안

국방시설본부령 등 32개 부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국방시설본부령」의 개정) 국방시설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국군복지단령」의 개정)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합동군사대학교령」의 개정)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국방정신전력원령」의 개정)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국군심리전단령」의 개정) 국군심리전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의 개정)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국방출판지원단령」의 개정) 국방출판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의 개정)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의 개정)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센터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국군체육부대령」의 개정) 국군체육부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부대장과 부부대장)”을“(부대장과 참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부부대장”을 각각 “참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부대장”을 “참모장”으로 한다.

제11조(「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총괄한다”를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12조(「작전사령부령」의 개정) 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부사령관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군단사령부령」의 개정) 군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부군단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사단령」의 개정) 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부사단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육군특수전사령부령」의 개정)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부사령관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육군미사일사령부령」의 개정)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5 -

제3조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부사령관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수도방위사령부령」의 개정)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부사령관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육군항공사령부령」의 개정) 육군항공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부사령관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육군인사사령부령」의 개정)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부사령관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육군군수사령부령」의 개정) 육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

다만, 참모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1차 상급 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육군교육사령부령」의 개정) 육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부사령관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육군보병학교령」의 개정) 육군보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육군포병학교령」의 개정) 육군포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육군기계화학교령」의 개정) 육군기계화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

- 7 -

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육군공병학교령」의 개정) 육군공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육군종합군수학교령」의 개정)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육군종합행정학교령」의 개정)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육군학생군사학교령」의 개정)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8 -

제29조(「육군부사관학교령」의 개정) 육군부사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육군훈련소령」의 개정) 육군훈련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조정·감독한다”를 “조정·감독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31조(「육군정보통신학교령」의 개정) 육군정보통신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를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육군정보학교령」의 개정) 육군정보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를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로 한다.

제33조(「공군교육사령부령」의 개정)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를 “부사령관이”로 한다.

- 9 -

제34조(「공군군수사령부령」의 개정) 공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참모부서의 장 중 상서열자”를 “참모장”으로 한다.

제35조(「해병사단령」의 개정) 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며, 부사단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본부장) ①·② (생략) <신설>	제3조(본부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국군복지단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단장의 직무) (생략) <신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총장) ①·② (생략) <신설>	제3조(총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원장) ①·② (생략) <신설>	제3조(원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국군심리전단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 (단장의 직무) (생략) <신설>	제4조 (단장의 직무)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소장) ①·② (생략) <신설>	제3조(소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 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국방출판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단장) ① ~ ③ (생략) <신설>	제3조(단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국방부군비통제검중단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② (생략) <신설>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센터장의 직무) (생략) <신설>	제5조(센터장의 직무)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 라 센터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국군체육부대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부대장과 부부대장) ①체육 부대에 부대장과 부부대장을 둔 다. ②부대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 로, 부부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생략) ④부부대장은 부대장을 보좌하 며, 부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부대장과 참모장) ①----- ----- 참모장----- --. ②----- -- 참모장----- ----. ③ (현행과 같음) ④참모장----- -----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① (생략) ② 유해발굴감식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발굴단의 업무를 <u>총괄한다</u> . ③·④ (생략)	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총괄</u> <u>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u> <u>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u> <u>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u> <u>라 단장의 직무를 대리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

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생략) ② 각 사령부의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u>대행한다</u> . ③ (생략)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대행</u> <u>하며, 부사령관이 직무대리를</u> <u>할 수 없는 경우 해당지휘관의</u> <u>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u> <u>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군단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군단장 등의 직무) ① (생략)	제3조(군단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군단장은 군단장을 보좌하며, 군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u>대행한다</u> .	② ----- ----- ----- ----- <u>대행하며, 부군단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사단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사단장 등의 직무) ① (생략)	제5조(사단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u>대행한다</u> .	② ----- ----- ----- ----- <u>대행하며, 부사단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 (생략)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u>대행한다</u> .	②----- ----- <u>대행하며, 부사령관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생략)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u>대행한다</u> .	②----- ----- <u>대행하며, 부사령관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사령관등의 직무) ①·② (생략) ③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u>대행한다</u> .	제5조(사령관등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대행하며, 부사령관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u> ④ (현행과 같음)
④ (생략)	

육군항공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 (생략)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u>대행한다</u> .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u>대행하며, 부사령관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③ (생략)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사령관 등) ① ~ ③ (생략) ④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u>대행한다</u> .	제2조(사령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대행하며, 부사령관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u>

육군군수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참모장) ①·② (생략)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u>대행한다</u> . <단서 신설>	제4조(참모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 다만, 참모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u>

육군교육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령관등) ① ~ ④ (생략) ⑤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u>대행한다</u> .	제3조(사령관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대행하며, 부사령관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u>

육군보병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교장)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2조(교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u>

육군포병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교장) ① ~ ③ (생략) <신설>	제2조(교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육군기계화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 ③ (생략) <신설>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육군공병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u>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조(교장의 임명과 직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u>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교장) ① ~ ③ (생략) <신설>	제2조(교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교장) ① ~ ③ (생략) <신설>	제2조(교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육군부사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교장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2조(교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육군훈련소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참모장) ①·② (생략) ③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4조(참모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조정·감독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육군정보통신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교장) ① ~ ③ (생략)	제2조(교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u>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u>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u>부대</u> <u>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u> -----.

육군정보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교장) ① ~ ③ (생략)	제2조(교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u>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u>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u>부대</u> <u>예규에서 지정한 순위에 따라</u> -----.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령관) ① ~ ③ (생략)	제3조(사령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u>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u>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u>부사령관이</u> ----- -----.

공군군수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령관) ① ~ ③ (생략)	제3조(사령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u>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u>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u>참모장이</u> ----- -----.

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사단장 등의 직무) ① (생략)	제5조(사단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u>대행한다</u> .	② ----- ----- ----- ----- <u>대행하며, 부사단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휘관의 1차 상급지휘관 또는 보직권자가 별도 지정할 수 있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연락처	(02) 748-6579